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정부연구비의 올바른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2 개정, 개정 매뉴얼 등 중심)

< 2022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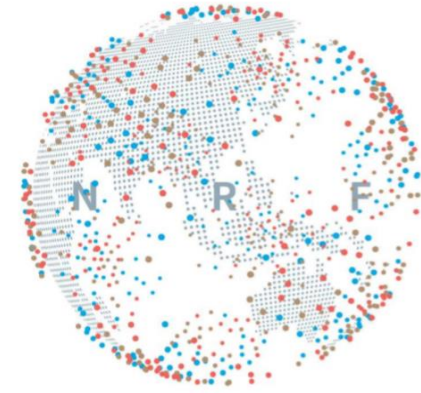
일 시 : '22. 6.28.(화) 15:05~15:25

장 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

주제발표 : 이정희 박사(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



차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2.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22. 3.25.) 주요 사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이유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 사유를 추가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최종평가의 실시대상을 명확히 하며, **학생인건비 계상 항목을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경미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전략〉

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개선(별표2)

-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학생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보안수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을 추가함.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와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에게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간접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후략〉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학생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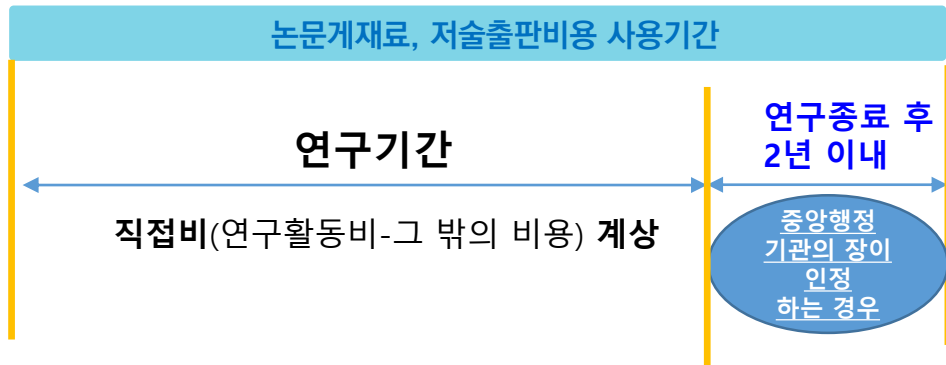
구분	혁신법 ('21. 1. 1.)	혁신법 개정 ('22. 1. 1.)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중략)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중략)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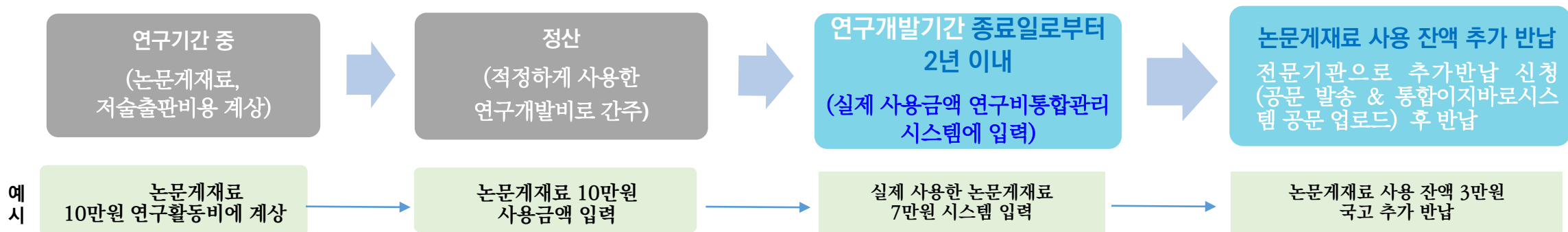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연구활동비(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전략)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략)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참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565호

2022년도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2년도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중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추천목적

-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부처·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업내용

- 다양한 재난관리 단계(예측감지대응)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용화·표준화·모듈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 개발

※ 플랫폼 기술 주요 특성

- ㉠ 공용화 : 다양한 재난 현장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 표준화 : 다양한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
- ㉢ 모듈화 : 단위 요소기술이 아닌 요소기술들이 통합되어 패키지화된 기술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과제제안요구서	총 사업기간 (총 연구비)	21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과제 형태
대형 산물피해지역의 하천재난대응을 위한 복합센싱기술, 통합 IoT, 플랫폼 및 실증기술개발	2022. 7 ~ 2025. 6. (총 30억원)	2022. 6 ~ 2022. 12. (6개월) (17개 과제, 5억원)	단위

※ 자세한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기간 및 연구비	총	36개월 (2022.7.1.~ 2025.6.30.)	3,0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6개월 (2022.7.1. ~ 2022.12.31.)	5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3.1.1. ~ 2023.12.31.)	1,0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4.1.1. ~ 2024.12.31.)	1,0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6개월 (2025.1.1. ~ 2025.6.30.)	500 백만원 내외	

※ 총 연구기간 36개월, 총 연구비 30억원 내외 지원예정,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신규사업공고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2&nts_no=177450&biz_no=337&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연구활동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출처>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https://www.digitalmarket.kr/kor/introduction/omplIntro/professionalContract.jsp?section=contract>

구분		혁신법 개정 ('22. 1. 1.)
직접비	<신설>	3) 연구활동비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간접비 (연구지원비)	<신설>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비용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활용비

- (연구활동비 계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 (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연구개발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 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장려금: 어떤 일을 장려하는 뜻으로 보조하여 주는 돈

계상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전체 연구개발기간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수정인건비

미지급인건비 (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연구수당

구분	혁신법 ('21. 1. 1.)	혁신법 개정 ('22. 1. 1.)
수정인건비 항목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 포함됨.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 제외)
연구수당 초과 기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 의 70퍼센트 초과 불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 의 70퍼센트 초과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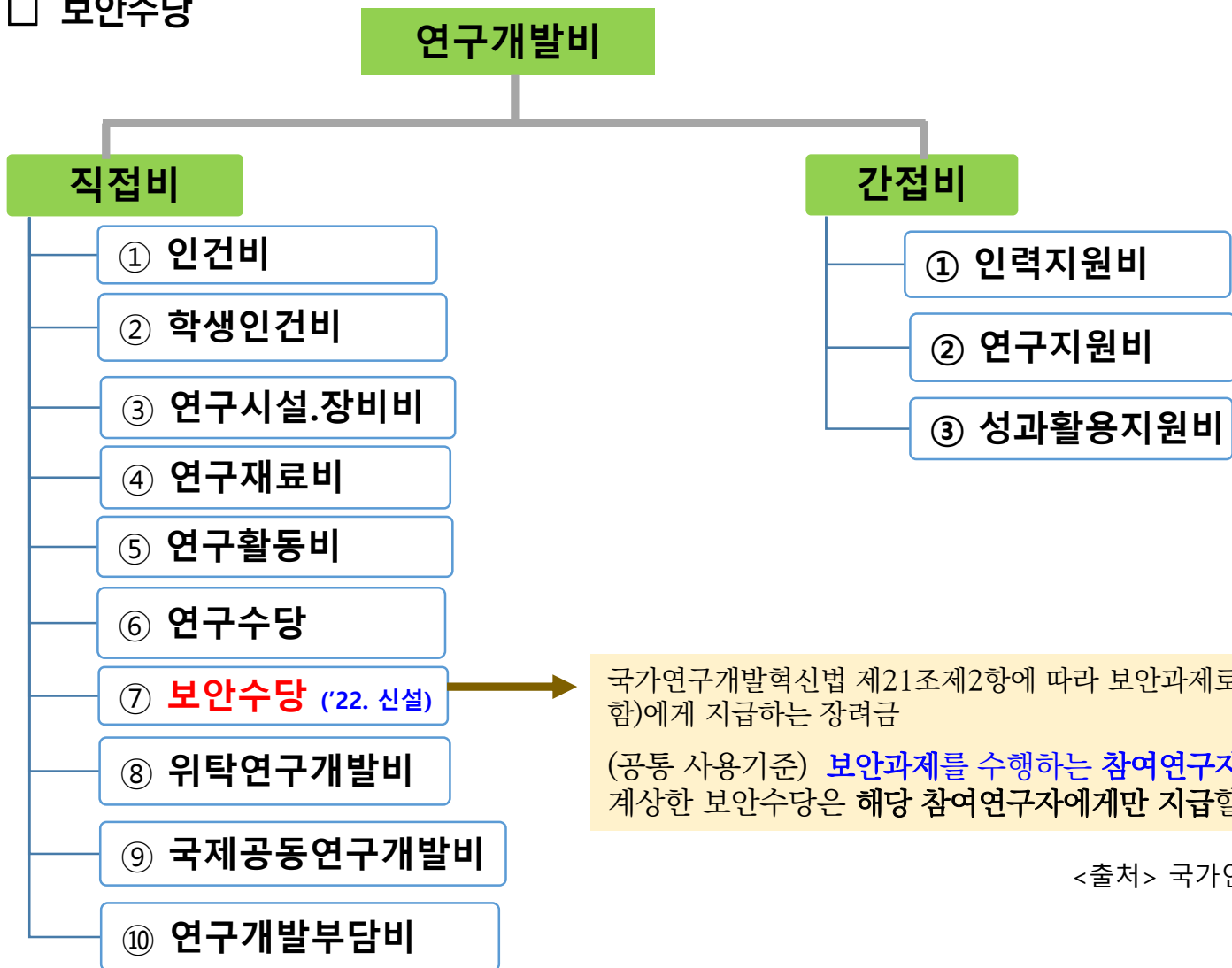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연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건비와 상이하므로 임금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 **연구수당 계상액을 수정인건비의 20%로 하는 것은 계상액 산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인건비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이 변동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보안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공통 사용기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구분	종전	혁신법 ('21. 1. 1.)	혁신법 개정 ('22. 1. 1.)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신설〉	· 정부출연연구기관(기본사업만 해당)만 계상 가능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3. pp192. 재구성

*(인정)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3. p191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전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간접비

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 1. 1.)	혁신법 개정 ('22. 1. 1.)
인력 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좌동 2. 좌동 (개정)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후략)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 1. 1.), 매뉴얼 개정('22. 3.) 사항

□ 간접비

구분	혁신법 개정 ('22. 1. 1.)	
인력 지원비	〈신설〉	4. 연구실안전관리비 4의 2. 학생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학생
산업
재해
보험료

근로계약 체결 → 직접비-인건비에서 지급

근로계약 미체결 → 간접비-연구지원비(학생산재보험료)에서 지급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출처> 연합뉴스(2019. 12.27.), 국민일보(2019. 11.13.), 연합뉴스(2021. 5.26.)

2.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2022. 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계속과제

- 적용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중 혁신법 매뉴얼이 발간된 2021. 6.30.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에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과제
*최초 협약 체결 당시에 총연구기간에 대해 연차별 연구수당을 기 계상한 과제는 제외

- 적용방법: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을 새롭게 계상(기 입력금액은 변경 불가)
- 상기 방법으로 경과 조치 기간 내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으로 간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 ~ '20. 2.	'20. 3. ~ '21. 2.	'21. 3. ~ '22. 2.	'22. 3. ~ '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20. 3.~'23. 2.		
수정 인건비금액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최초	200만원	-	-	-
	수정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시행일(2021. 1. 1.)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협약 체결 당시에는 1차년도 연구수당만 계상하였으나, 연차협약 등을 진행하면서 2~4차년도 연구수당을 수정하여 계상함. -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협약 체결 당시보다 연구수당 증액이 불가하지만, 연구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을 새롭게 계상한 경우에는 위의 예시처럼 변경된 연구수당 계상액인 600만원(2차년도 200만원+3차년도 200만원+4차년도 200만원)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으로 간주함. 			

2.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2022. 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초 협약 당시 기준 수정인건비의 20%가 초과된 계속과제

- 적용과제: 2021. 6.30.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되어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인건비의 20%가 초과된 과제
- 적용방법: 2021. 6.30. 이전의 연차협약 등으로 인해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 ~ '20. 2.	'20. 3. ~ '21. 2.	'21. 3. ~ '22. 2.	'22. 3. ~ '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20. 3.~'23. 2.		
수정 인건비금액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최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수정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수정계상 불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구수당 계상액은 800만원이나, 2,3차년도 수정인건비가 증액되어 연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당 또한 각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4차년도 현재 시점에서 사용한 연구수당이 200+400+400=1,000만원으로 최초 계상액인 800만원을 초과함. - 다만, 혁신법 시행 이전에 연차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미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점에서 수정인건비의 20%인 연구수당은 1,000만원(2차년도 400만원+3차년도 400만원+4차년도 200만원)으로 보아 2,3차년도에 증액된 연구수당을 인정 			

2.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2022. 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법 시행 후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가 1명인 계속과제

- 적용과제: 2021. 1. 1.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 적용방법: 정산대상기간 동안 과제를 계속 수행 중인 참여연구자 1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가 초과 지급 되더라도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 ~ '20. 2.	'20. 3. ~ '21. 2.	'21. 3. ~ '22. 2.	'22. 3. ~ '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20. 3.~'23. 2.		
참여연구원		2명	혁신법('21. 1. 1.) 이후 1명	
연구수당 계상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정산대상기간에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집행(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혁신법 시행 전에 참여연구자가 2명이었고,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의 경우 정산대상기간 동안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해도 시행 이후 참여연구원 1명인 연구개발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함. 			

(참고) 혁신법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구분	계상불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불문)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 (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기관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내부거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외 (계상가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에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td> </tr> </table>	예외 (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에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외 (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에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임차료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p>		

(참고)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항목별 제한기준 판단 시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①~④의 합) 20% 이내 ① 인건비(현물 포함, 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②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③ 미지급인건비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	○
간접비	수정 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6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불인정 금액 계산식〉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47)

현물(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물품 외상거래(x)



정직한 정상거래(o)

- 초기 연구실 마련을 위해
- 소액 물품의 빈번한 구매가 이루어질 때
- 허위 물품 거래 등

-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사항 확인
- 혁신법에서의 구입기한 확인 (연구시설.장비/연구재료 등)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자재의 구입가, 구입시기 등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
- 구매방법(수의계약/공개입찰)에 따른 준비
-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 활용
-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장비진흥센터 공동활용 장비 유무 확인 등
- 가능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구매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구매 및 검수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전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후략)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전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후략)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